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10일

남원시 훈령 제 447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사부서”란 감사·징계요구와 공직기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1. 행정실무원 : 문서의 접수·발송, 부속실 운영·관리,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전산프로그램 운영, 연구·실험·검사 등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 청사 환경관리 및 미화·조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9. 보건실무원 : 의료업무를 지원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에”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과 협의를 거쳐 휴가를 신청하며, 신청 시 관리

부서에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를 “장에게 휴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제6항제1호를 준용
3.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때에 합산하여 신청

제64조제4항 중 “장이 되고”를 “담당국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은위원장이 본청의 담당급”을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본청의 부서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리부서의 장이 위원장의”을 “위원장이”로, “관리부서 주무담당”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에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0조제4항 중 “징계의결요구자(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감사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감사부서”란 감사·징계요구와 공직기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u></p> |
| <p>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행정실무원 : 업무보조, 청사환경, 진료보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u></p> <p>2. ~ 8. (생략)</p> <p>9. <u>영양플러스 : 임신부, 수유부, 영유대상영양 위험요인 대상자에게 식품, 우유지원 인력</u></p> <p>10. <u>방문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분야 통합건강증진 사업</u></p> | <p>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 ----- -----.</p> <p>1. <u>행정실무원 : 문서의 접수·발송, 부속실 운영·관리,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전산프로그램 운영, 연구·실험·검사 등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 청사 환경관리 및 미화·조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u></p> <p>2. ~ 8. (현행과 같음)</p> <p>9. <u>보건실무원 : 의료업무를 지원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u></p> <p><u><삭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u>인력</u></p> <p>11. (생략)</p> <p>제32조(휴직기간 및 급여) ① (생략)</p> <p>제44조(특별휴가) ①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u>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소속부서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의 계산은 「<u>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제23조 제13항제1호를 준용한다.</p> <p>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소속부서의 <u>장과 협의를 거쳐 휴가를 신청하며, 신청 시 관리부서에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u></p> | <p>11. (현행과 같음)</p> <p>제32조(휴직기간 및 급여)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44조(특별휴가) ① ----- ----- ----- 「<u>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18조제1항에 ----- ----- --.</p> <p>② ----- ----- ----- ----- ----- ----- ----- ----- -----.</p> <p>1. 재직기간의 계산은 「<u>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18조제6항제1호를 준용</p> <p>2. ----- ----- <u>장에게 휴가를 신청</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3. <u>관리부서는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 허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u></p> | <p>3. <u>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때에 합산하여 신청</u></p> |
| <p>4. <u>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회 5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 <p><삭 제></p> |
| <p>5. <u>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휴가 신청 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 <p><삭 제></p> |
| <p>제6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u>장이 되고</u> 간사와 서기는 관리부서의 공무원 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u>위원은위원장이 본청의 담당급 공무원 중에서</u> 지명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공무직노동조합노조위원 중에서 추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7.4.28.> ⑥ <u>관리부서의 장이</u> 위원장의</p> | <p>제6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담당국장이 되고</u> ----- ----- ----- ⑤ <u>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본청의 부서장급</u> ----- ----- ----- ----- ⑥ <u>위원장이</u>-----</p> |

시 보

| 현 행 | 개 정 안 |
|---------------------------------|-------------------------|
| <p>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 <p>----- -----.</p> |

[별표 1] <개정 2018. 7. 1., 2018. 12. 9., 2019. 10. 15., 2022. 8. 29.>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1항 관련)

| 구분 | 계 | 행정실무직 | | | 시정관리직 | | | |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유망기업 | 특별자치단체 | 보조 | 정원외 | | |
|----|--------|-------|-------|------|-------|---------------|--------------|--------------|-------|------|------|------|--------|----|-----|-------|------|
| | | 소계 | 행정실무직 | 사무행정 | 소계 | 시정관리직 유지관리 | 행정사무 행정관리 | 행정지도 민원접수 | | | | | | | 소계 |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
| 계 | 355 | 141 | 138 | 3 | 66 | 28 | 26 | 12 | 13 | 82 | 9 | 2 | 3 | 29 | 0 | 0 | 0 |
| 분류 | 소계 | 214 | 91 | 88 | 3 | 25 | 9 | 4 | 12 | 13 | 80 | 0 | 2 | 3 | 0 | 0 | 0 |
| | 기록실 | 1 | 1 | 1 | | | | | | | | | | | | | |
| | 감사실 | 0 | | | | | | | | | | | | | | | |
| | 시민소통실 | 2 | 1 | 1 | | | | | 1 | | | | | | | | |
| | 행정지원과 | 9 | 7 | 6 | 2 | 1 | | 1 | | 1 | | | | | | | |
| | 총무관리과 | 4 | 2 | 2 | | 2 | 2 | | | | | | | | | | |
| | 민원과 | 6 | 6 | 6 | | | | | | | | | | | | | |
| | 문화예술과 | 10 | 8 | 7 | 1 | 2 | 2 | | | | | | | | | | |
| | 관광과 | 2 | 1 | 1 | | 1 | 1 | | | | | | | | | | |
| | 교육체육과 | 22 | 21 | 21 | | | | | | 1 | | | | | | | |
| | 주민복지과 | 7 | 2 | 2 | | | | | | | | 2 | 3 | | | | |
| | 노인복지인과 | 5 | 2 | 2 | | 3 | 3 | | | | | | | | | | |
| | 여성가족과 | 5 | 5 | 5 | | | | | | | | | | | | | |
| | 재정과 | 10 | 10 | 10 | | | | | | | | | | | | | |
| | 일자리경제과 | 4 | 3 | 3 | | 1 | | | 1 | | | | | | | | |
| | 기업지원과 | 1 | 1 | 1 | | | | | | | | | | | | | |
| | 환경과 | 2 | 2 | 2 | | | | | | | | | | | | | |
| | 농업농촌과 | 1 | 1 | 1 | | | | | | | | | | | | | |
| | 경제산업과 | 3 | 1 | 1 | | 2 | | 2 | | | | | | | | | |
| | 통신과 | 2 | 2 | 2 | | | | | | | | | | | | | |
| | 신원복지과 | 8 | 6 | 6 | | 2 | 1 | 1 | | | | | | | | | |
| | 토시과 | 3 | 3 | 3 | | | | | | | | | | | | | |
| | 건설과 | 16 | 1 | 1 | | 3 | | | 3 | 12 | | | | | | | |
| | 안전관리과 | 3 | 1 | 1 | | 2 | | | 2 | | | | | | | | |
| | 환경과 | 78 | 1 | 1 | | | | | | 78 | | | | | | | |
| | 교통과 | 7 | 3 | 3 | | 4 | | | 4 | | | | | | | | |
| | 건축과 | 2 | | | | 2 | | | 2 | | | | | | | | |

[별표 1의2] <2016. 7. 1, 2017. 4. 28, 2022.6.29.>

청원경찰의 정원

| 부서별 | | 계 | 경비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
| 계 | | 26 | 26 | 0 |
| 본청 | 소계 | 16 | 16 | |
| | 행정지원과 | 6 | 6 | |
| | 문화예술과 | 1 | 1 | |
| | 노인장애인과 | 2 | 2 | |
| | 산림복지과 | 7 | 7 | |
| 직속기관 | 소계 | 1 | 1 | |
| | 보건소 | 1 | 1 | |
| 사업소 | 소계 | 8 | 8 | |
| | 관광시설사업소 | 3 | 3 | |
| | 환경사업소 | 2 | 2 | |
| | 상수도사업소 | 3 | 3 | |
| 의회사무국 | | 1 | 1 | |

남원시 고시 제2023-68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공고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안 제8조제1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05. 10. ~ 2023. 05.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5751), 팩스(063-620-6715),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녹지과(063-620-5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 | | | |
|--|---|--|--|
| 1. 의견제출 목록 |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 3. 의 견 | | | |
| 4. 기 타 | | | |
|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 <p>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26. 숙박업(1개 업종)

| 숙박업 (1-3) | | | | | | | | | |
|---------------------------------|---|---|---|---|-------------------|--------|---|---|---|
| 분 | 쟁 | 유 | 형 | 해 | 결 | 기 | 준 | 비 | 고 |
| 1) 성수기 주중 | | | | | | | | | |
|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 | | | |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 | | ○ | 계약금 | 환급 | | |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1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3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5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 ○ | 총요금의 80% | 공제후 환급 | | |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 | | | |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 환급 | | |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 ○ | 손해배상 | | | | |

숙박업 (2-3)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비고 |
|--|--|----|
|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
|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숙박업 (3-3)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 계약금 환급 | |
|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 계약금 환급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50% 감경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남원시 고시 제2023-69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안 제11조제4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05. 10. ~ 2023. 05.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5751), 팩스(063-620-6715),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녹지과(063-620-5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 | | |
|------------|--------|---|
| 1. 의견제출 목록 |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의 견 | | |
| 4. 기 타 |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이용료의 예약 및 반환)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 5.</p> <p><u><신 설></u></p> | <p>제11조(이용료의 예약 및 반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1.~ 5. (현행과 같음)</p> <p>6. <u>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u></p> |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26. 숙박업(1개 업종)

| 숙박업 (1-3) | | | | | | | | | |
|---------------------------------|---|---|---|---|-------------------|--------|---|---|---|
| 분 | 쟁 | 유 | 형 | 해 | 결 | 기 | 준 | 비 | 고 |
| 1) 성수기 주중 | | | | | | | | | |
|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 | | | |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 | | ○ | 계약금 |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1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3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 | ○ | 총요금의 50% | 공제후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 ○ | 총요금의 80% | 공제후 환급 | | | |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 | | | | |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 환급 | | |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 | | ○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 배상 | | |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 | ○ | 손해배상 | | | | |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3)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비고 |
|--|--|----|
|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
|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 남원시 공고 제 2023 - 1027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 지정 번호 | 대지 위치 | 건축주 성명 |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도로 면적 (㎡) | 이해관계인 | | |
|----------|---|-----------|----------------------|-----------------|-----------------|-----------------|-------------------------------|-------------|------------|
| | | | | | | |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 2023-9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1024-1(답), 1024-2(답) | 윤*원 | 2023-건축과- 신축허가-17 | 238 | 3~3. 2 | 780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1041(도로) | 78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